

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

접수 번호	접수 일시	발급 일시	처리 기간 즉시
소유자	성명(명칭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(휴대)전화번호	
이륜자동차	차명 (예시 : 데이스타 250)	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	
	사용 본거지 (주민등록지,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)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·출장소장 귀하

첨부 서류	1.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)	수수료
	2. 이륜자동차제작증(신규로 제작·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 1부 3.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(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 4. 실측확인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	없음

유의 사항

-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)
 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4항제18호)
- (휴대)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,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